

# 변경대비표

## 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18년 5월 28일
3. 정정사유
  -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한도 변경

### 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~4. (생략) 5.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 6.~8. (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6.~8. (현행과 동일)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 호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18 년 5 월 28 일
3. 정정사유
  -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한도 변경

### 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2부. 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⑥수익증권 등 - 투자한도: 5% 이하 - 투자대상조건: 법의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 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(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 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며,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 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)	⑥수익증권 등 - 투자한도: 40% 이하 - 투자대상조건: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 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